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83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1. 10. 26. 의안번호 제2361호에 의거 원안 가결된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다.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4. 민간위탁 필요성

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 전문적인 시설 운영 필요

나. 각종 후원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 장애인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

5. 위탁내용

가. 위탁운영기간: 2022. 1. ~ 2026. 12.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위탁대상: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종 사 자	규 모
고성군 장애인복지센 터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 2층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 터)	7명	- 1층: 수중재활실, 카페담다(장애인 직업재활) - 2층: 사무실 1, 언어재활실 1, 인지학습실 1, 특수체육실 1

다. 위탁방법 및 그간 추진사항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2021. 12. 21.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대표자 최봉원) 선정
- 위탁계약 체결: 2021. 12. 23.
- 위탁운영: 2022. 1. 1. ~ 현재 (센터장 김도현)

라. 위탁사무내용: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전반

마. 연도별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재원별	2022년 (A)	2023년	2024년 (B) (편성 요구액)	증감액 (C)	비고
합 계	309,903	323,375	381,215	71,312	
도 비	60,000	60,000	42,000	△18,000	
군 비	249,903	263,375	339,215	89,312	

- 2021년 군의회 동의 후 편성한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이 20% 이상 증액
- 증액 사유: 인건비 증가
 - 종사자 인건비 인상: 매년 4% 정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 산출내역: 연 14,000천 원 × 2년 = 28,000천 원 정도
 - 인력 충원: 2023. 7. 언어재활사 1명 채용(3급 7호봉)
 - 산출내역: 기본급 29,500천 원 + 제수당 13,812천 원 = 43,312천 원 정도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전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임.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시행(시행일 2022.12.27.)으로 동의안 제출 시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산출하여 제출하고 의회 동의 후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개정 2022.12.27.>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중요내용 변경사항: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 (당초 동의안)

- 소요예산(2022년도 소요 예산액): 318,315천 원

- 2022년도 예산액: 309,903천 원

- (금회 변경 동의안)

· 소요예산(2024년도 소요 예산액): 381,215천 원

· 증액사유: 인건비 인상, 언어재활사 1명 채용

○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소요 예산만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소요 예산 예산액이 중요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20% 이상 변경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언어 재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9. 원안가결